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6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## 2. 제안이유

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- 다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(안 제4조)
- 라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, 이용료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마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의무(안 제8조부터 제10조)
- 바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(안 제11조)
- 사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(안 제12조)
- 아.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재정지원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고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- 3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(안 제4조)
  - 이용 대상을 9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로 정함
- 4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, 이용료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5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의무(안 제8조부터 제10조)
- 6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(안 제11조)
  - 놀이터의 이용에 따른 안전 사항 조치 및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 손해 배상에 대비함
- 7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(안 제12조)
- 8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재정지원(안 제15조)

#### <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개요 >

- 조성위치 : 지상1~4층(일조량, 환기, 비상대피로 확보시 (반)지하 가능)
- 공간면적 : 아동 1인당 10㎡ 이상
  - 공간구성 : 실내놀이공간 80%, 관리 및 지원공간 20%
- 주요내용 : 실내놀이공간 조성, 놀이돌봄서비스, 프로그램 운영
- 이용대상 : 0~만9세 아동(영·유아 + 초등학교 저학년)
- 이 용 료 : 이용료 3천원 + 놀이돌봄 2천원(보호자 포함 / 2시간)
- 종 사 자 : 시설면적 100㎡당 종사자 1인
  - 돌봄요원(보육교사·유치원교사·사회복지사 자격) 및 시설안전요원 각 1인 필수 배치
- 운영방법 : 자치구 직영, 민간위탁 운영 또는 공간제공자 지정 위탁 등
- 예산지원 : 설치비(시비100%), 운영비(시비 월150~190만원), 인건비(2인까지 시비 100% / 3~6인 시비 30%, 구비 70% / 6인 초과 구비 100%)

## 다. 검토의견

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부족
  - 미세먼지,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외 놀이활동 제약
  - 서울시 아동 권장 놀이시간 1일 1시간 대비 주중 평균 143분으로 부족  
(21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)
-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가격으로, 실내 놀이시설 이용구민 경제부담 가중
  - ※ 관내 민간 키즈카페(8개소) 평균 이용료 22,300원(평일 2시간 / 보호자 포함)
-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
-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을 근거하여 금천구 관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[시행 2023. 12. 14.] [법률 제1945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3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0. 12. 29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0. 12. 29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